

전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233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소송구조)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6. 24

판결 선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27,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9. 5. 3.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2009.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망인 사망 후인 2010 년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망 D (2008. 12. 29. 사망)으로부터 2004. 4. 28.경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 D의 상속인 겸 망 D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양수금등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2407)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10.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1나1647 판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1. 27.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1다95069판결).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전주지방법원 E), 위 법원은 2011. 7. 20. 청구금액을 '40,627,003원 및 그 중 36,883,115원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40,627,003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판결).

보건대, 이 사건 후소는 원고가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원고가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전소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므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후소에 미치므로 이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40,627,003원을 배당받아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성실